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103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시설관리
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 7월 5일



정승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14 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로 형의 집행 또는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경영기획부장
	성 명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p> <p>① <생략></p> <p>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p> <p>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p> <p>① <현행과 같음></p> <p>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p> <p>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p> <p>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p> <p>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p> <p>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p> <p>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p> <p>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p> <p>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p> <p>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로 형의 집행 또는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p> <p>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